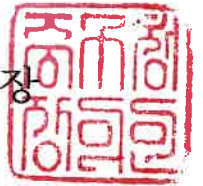
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12.31.字 만료 예정으로 연장 필요
-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.12.31.까지 연장하여 주차장 세입·세출 업무를 별도 관리하고, 주차장 및 주차 단속 관련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: 조례안 제2조제2항 개정
  - 현행 존속기한 : 2018.1.1.~2023.12.31.(5년)
  - 연장 존속기한 : 2024.1.1.~2028.12.31.(5년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193, FAX: 3396-8869, 메일: lazy1114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(생략)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b>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b>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